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나59511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나5951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 선고 2020가소263578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유민주

피고, 항소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명

변론종결 2022. 4. 7.

판결선고 2022. 8. 11.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 선고 2020가소263578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773,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384 도로 377㎡, 같은 리 385 하천 954㎡, 같은 리 385-2 하천 47㎡, 같은 리 440-2 도로 69㎡, 같은 리 500-3 도로 919㎡, 같은 리 산28-4 구거 15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던 자이고, 피고는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일원에서 시행한 이길지구 대규모 경지정리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2019. 4. 30. 강원도지사에게 경지정리사업을 위한 환지계획 인가신청을 하면서 국공유지 무상양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강원도지사는 2019. 6. 11. 농어촌정비법 제112조를 근거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113필지 52,394㎡의 국공유지에 관한 무상양여결정을 하였다. 다. 위 무상양여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에게 양여되었다(이하 ‘이 사건 양여’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은 2019. 7. 31. 말소되었고, 등기기록도 폐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농어촌정비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양여될 수 있는 대상은 행정재산에 국한되므로 일반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규정에 따라 양여될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무상양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강원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양여받았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 상당액인 10,773,7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각 토지는 행정재산이며, 설령 일반재산이라 하더라도 농어촌정비법 제112조 제1항은 행정재산 외에 일반재산에도 적용되므로 이 사건 양여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법률상 원인이 있다.

3. 판 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먼저 이 사건 각 토지가 일반재산인지, 행정재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국유재산법 제6조에 의하면,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된다.

총괄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참조), 갑 제8호증(국유재산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행정재산이 되려면, ① 법령에 의하여 행정재산으로 지정된 경우, ② 행정처분으로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경우 또는 ③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323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토지가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9호증(재산실태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가 주로 유흥지, 전답, 임야 등으로 쓰이고 있는 사실, 구거 및 농로로 쓰이고 있는 부분은 그 일부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국유재산법 상 일반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다음으로 농어촌정비법 제112조 제1항이 행정재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농어촌정비법 제112조 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공유의 도로, 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둑), 구거(도랑), 저수지 및 하천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및 하천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공유지를 농어촌정비사업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농어촌정비사업 지역의 국유인 일반재산 및 공유인 일반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제1항의 “그 국공유지”라는 표현은 같은 항에서 먼저 언급된 “국공유의 도로 등”을 가리키는 단어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행정, 일반재산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국공유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제1항에 열거된 도로 등은 보통 행정재산으로 분류되는 시설이므로 제1항의 “폐지”란 행정재산이 더 이상 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그 용도를 폐지하고 일반재산에 편입시킨다는 뜻인 ‘용도폐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제3항에서 농어촌정비사업 지역의 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한 관리·처분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문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제1항은 행정재산의 관리·처분방법을 규정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어촌정비법 제112조 제1항은 행정재산에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일반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이 사건 양여는 농어촌정비법 제11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한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 및 등기기록이 폐쇄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피고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형태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경우 수익자는 원래 취득한 이익을 원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7조 제1항).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 및 등기기록이 폐쇄되었으므로 그 회복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949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다374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토지의 원물반환은 불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갑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대장상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773,7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수탁일	소재지*	지목	현황	면적	재산가액
2009.09.21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384	도로	구거.잡종지	377.00	1,553,240
2009.09.21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385	하천	구거.잡종지	954.00	3,930,480
2009.09.21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385-2	하천	구거.잡종지	47.00	193,640
2011.12.18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440-2	도로	잡종지	69.00	284,280
2013.04.15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500-3	도로	도로.답	919.00	4,696,090
2013.08.08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28-4	구거	도로.답	153.00	115,970
	합계(6필지)			2,519.00	10,773,700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10,773,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구광현, 판사 양철한, 판사 이정형